

의안번호	2219107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6.9.3.
추 계 번 호	26D2739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8항 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사람도 내란·외환·살인·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제8항 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(안 제5조제8항)

- 개정안은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란·외환·살인·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현행법 제5조제5항제3호가목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, 범죄경력을 사유로 안장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상 안장이 제한되던 사람이 새로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비용과 묘지(봉안시설) 조성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새로 안장이 가능해지는 대상자의 수와 그 중 실제로 안장을 신청하여 안장 대상으로 결정될 인원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개정안은 형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안장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행위 시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
 - 또한,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국립묘지 누적 안장 실적은 2020년 313,788기에서 2024년 371,107기로 연평균 약 1만 4,330기씩 증가하고 있음(e-나라지표 「국립묘지별 안장현황」, 국가보훈부 내부행정자료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